

2023학년도 유치원 안전계획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유치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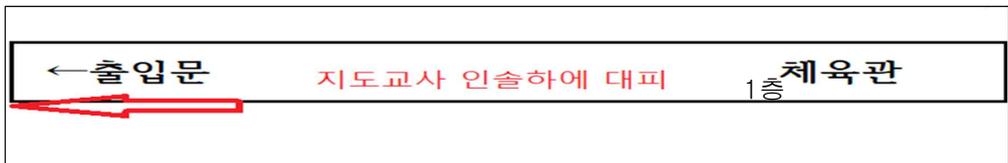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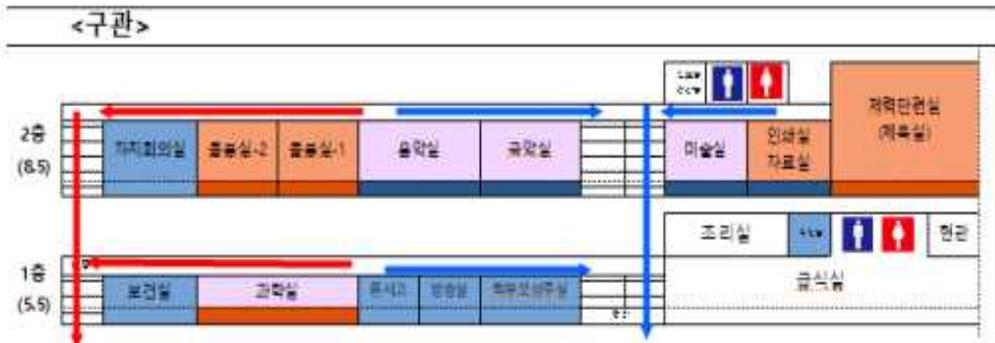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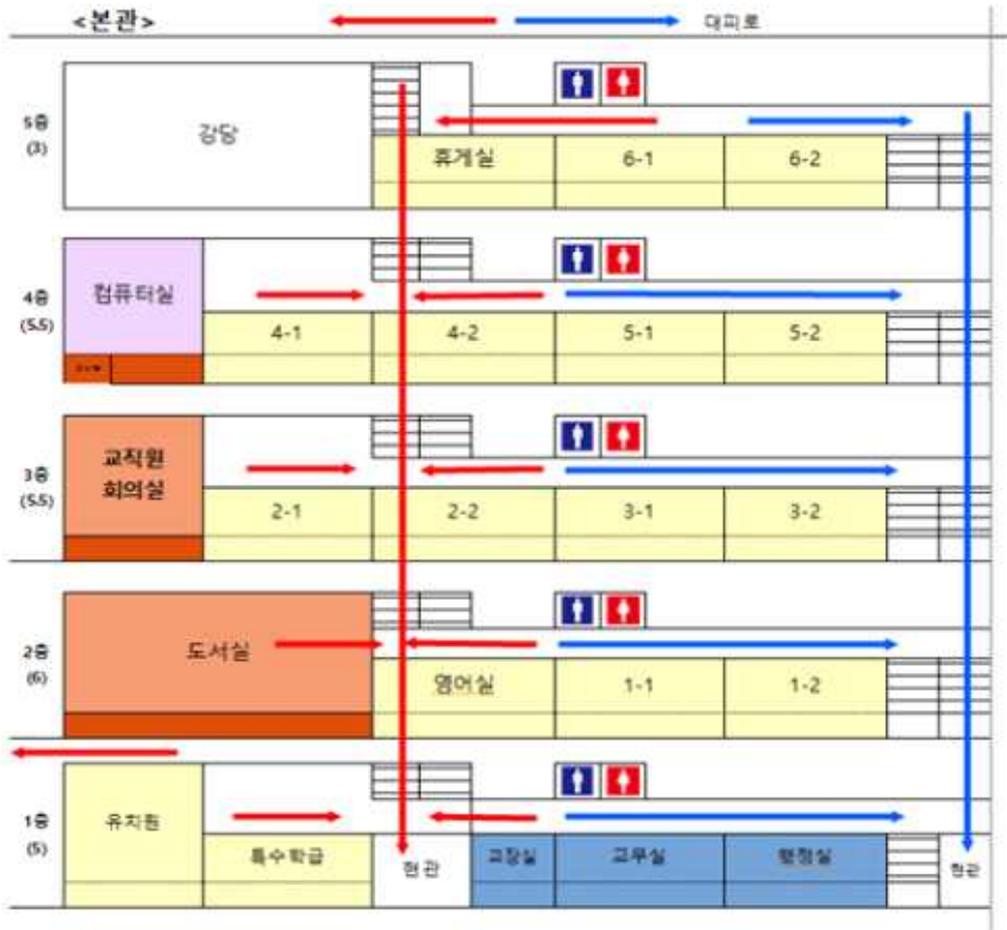
| | | | | | |
|-----|-------------------------------------|-------------|----------|------|-------------------------------------------------------------|
| 학교명 | 이천가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설립 구분 | 공립 | |
| 주소 | 1740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2065번길 112 | | | | |
| 전화 | 632-6461 | FAX | 637-9061 | 홈페이지 | http://www.icks.es.kr/ |
| 교장 | 유00 | 학교안전 책임관 | 서00 | 행정실장 | 조00 |

| 학교 현황 | 학년 | 유치원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총 | 비고 |
|-----------|---------|-----|---------|-----|-------------|-----|-----------------------|-----|----|----|
| 학급수 | | 1 | 1 | 2 | 2 | 2 | 2 | 2 | 12 | |
| 학생수 | | 7 | 20 | 36 | 39 | 37 | 35 | 33 | 13 | |
| 교직원 현황 | 원장(여) | | 원감(여) | | 교사(여) | | 방과후 전담사(여) | | | |
| | 1 | | 1 | | 1 | | 1 | | | |
| 시설 현황 | 유치원 교실수 | | 유치원 놀이터 | | 교실 내 화장실 | | 기타실 (자료실, 창고, 교사실) | | | |
| | 1 | | 1 | | 1 | | 1 | | | |

【유치원 및 학교 위치도】



【유치원 및 학교 비상시 대피도】



- ★ 지진, 화재 등 재난 대피는 운동장 중앙으로 대피
- ★ 전쟁(포격, 화학전 등) 등 재난 대피는 건물 내 지하실로 대피

【 119안전센터-이천가산초병설유치원 거리 】



1. 학교 안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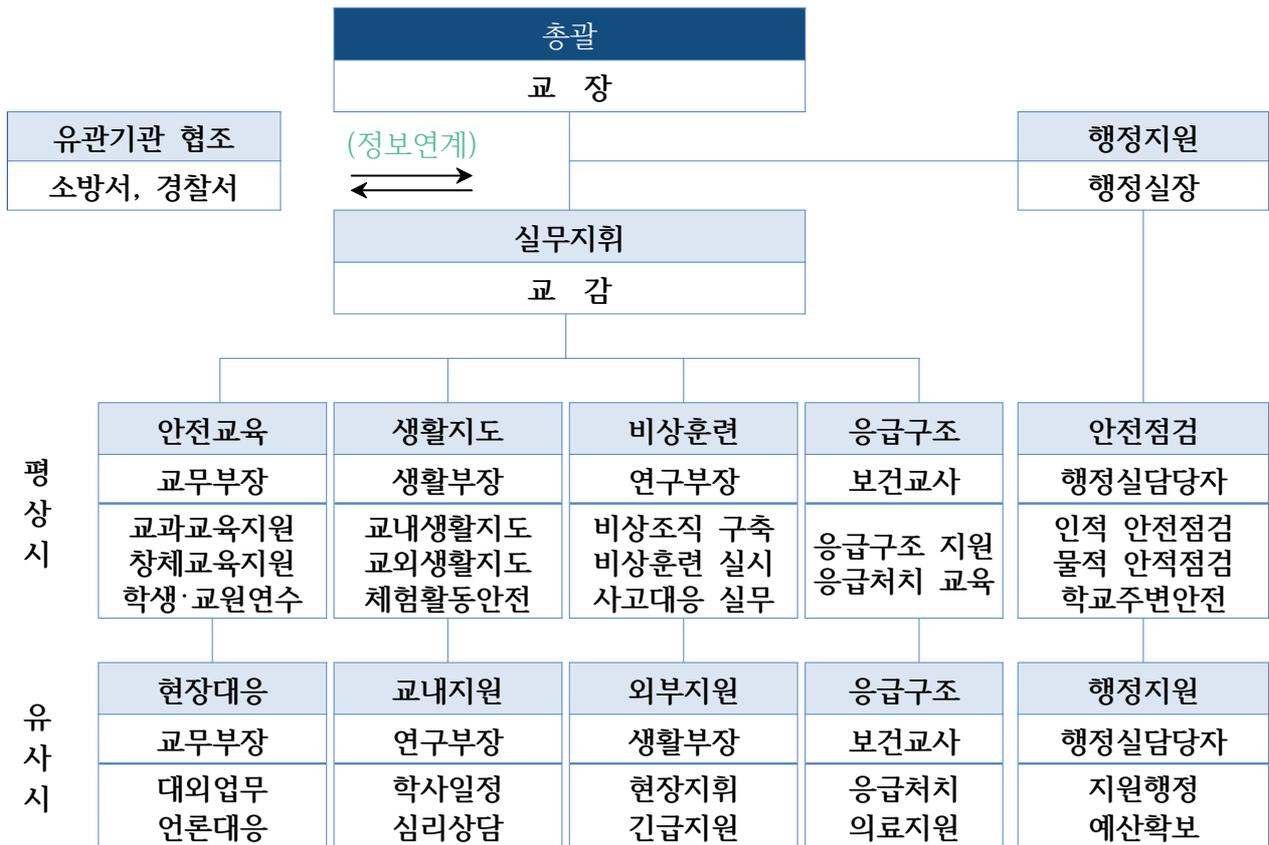
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수립과 시행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수립(2월), 모든 교직원에게 교육(3월) 실시

나. 교육안전 관리 체계 구축

- 교(원)장 : 학교안전계획 수립, 시행 총괄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속한 업무조정, 업무분장 등
- 교(원)감: 실무지휘

【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 】



【 학교안전 관련 업무분장 】

| 직 책 | | 임 무 | 비 고 |
|--------|----------------------------|------------------------------------------------------------------------------------------------------------------------------------------------------------------------------------------------------------------|---------------------------|
| | 최초 발견자 |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소방방재청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 5W1H 는 육하원칙 을 의미 |
| 대책 반장 | 교(원)장 |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 *사고지 휘소: 교무실 |
| 대책 부반장 | 교(원)감 (안전책임관) |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팀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팀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팀장) | |
| 현장 대응팀 | ☆생활진로 부장 ☆창의역량 부장 | - 현장대응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
| | ☆행정실무 사 |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팀 일지 작성) | |
| | ☆학급담임 |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필요시 외부지원팀 자문 및 지원 요청) | |
| | ☆보건교사 |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 |
| | 배움터지킴 이 | - 현장대응팀의 보조 지원 | *협조 요청시 |
| 교내 지원팀 | ☆교무기획 부장 | - 교내지원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
| | ☆연구혁신 부장 |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
| | ☆행정실무 사 |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

| | | | |
|--------|------------------|--------------------------------------------------------------------------------|-------------------|
| | 돌봄교사 | - 교내지원팀의 보조 지원 | *협조요청 시 |
| 행정 지원팀 | ☆행정실장 |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행.재정 지원 | 행정실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 |
| | ☆행정실 주무관 |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행정지원팀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및 일지작성 | |
| | 영양사 및 기타 직원들 | - 행정지원팀 보조 지원 | |
| 외부 지원팀 | 협력지원 단체 |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 |
| | 학교운영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 *학부모회 담당자 협조 |
| 상황기록자 | 실무사 | - 상황에 대한 기록 | |

【개인정보 관리 철저】

- 교직원,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지역의 재난대응기관, 응급의료기관, 치안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재난 관련 문서에 작성한다.\

【안전사고별 대응】

1. 학교현장 위기대응 매뉴얼대로 행동한다.
2. 대응 방법 요약

가. 대피 장소

| 유형 | 대피장소 | |
|-----|-------------------|-------------------|
| 지진 | 1차지진 발생시 | 1차지진 파동종료시~ 여진발생전 |
| | 신체(머리)보호 가능한 책상 밑 | 운동장 |
| 해일 | 언덕, 뒷산, 옥상 | |
| 민방공 | 유치원 교실 | |
| 화재 | 운동장 스탠드 | |

나. 경보 전파

| 주 수단 | 보조 수단 | 정전시 수단 | 비고 |
|-------|-------|----------|----------|
| 교내 방송 | 음성 방송 | 육성, 호루라기 | 방송실, 교무실 |

다. 대피 절차 및 행동요령

- ① 재난 경보 접수 및 전파(상황반)
- 유치원 교실의 전원 차단 및 출입문 개방
 - 교실 내 유아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지진시)
 - 화재시 화재신고(수습반)
- ※방사능 방재시 신속히 교실로 입실 후 창문을 닫고 에어컨 정지 후 대기한다

② 대피지시(1차 지진 파동 종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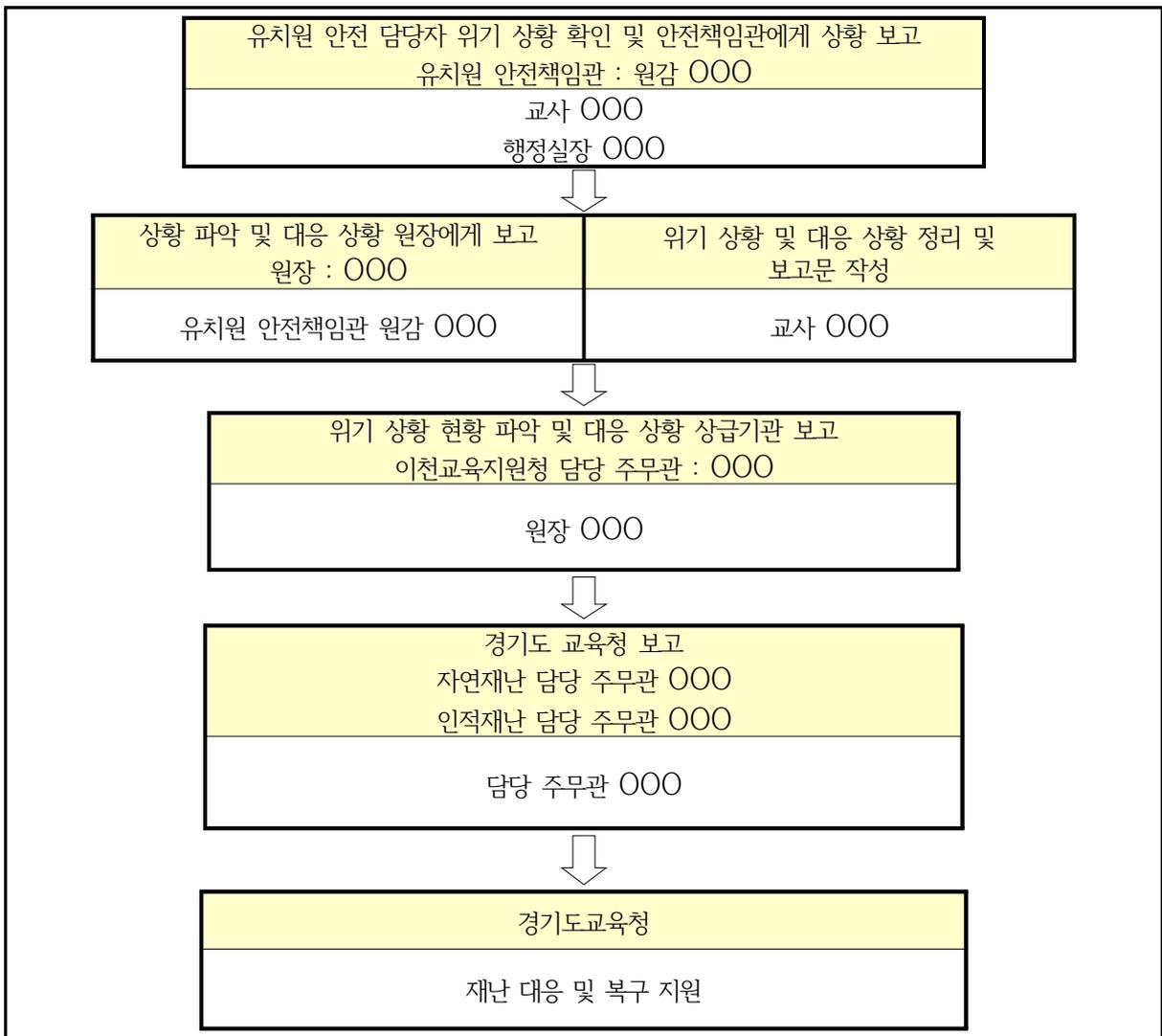
- 대응 조직을 가동한다(안내 유도반, 응급구조반)
- 출입문 쪽 학생부터 순서대로 유치원 입구에 정렬한다.
- 담임교사 통제 하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 대피 시 앞사람(학급) 추월 금지, 침착, 질서 유지
-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지진시)
-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춰 대피(화재시)
- 환자 안전대피 우선지원
- 안내 유도반은 유아 대피 확인 후 마지막으로 대피 장소로 이동한다.
- 응급 구조반은 환자 발생시 지원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구호 요청 및 구호를 실시한다.

③ 대피장소 도착 시 학생 인원 파악 및 라디오 방송 청취(지진, 해일, 민방공 대피 등)

④ 소방 및 응급 복구 활동(소화반, 응급구조반)

⑤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상황반)

라.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 대응 체계



가) 초기단계

- 신속하게 응급여부를 판단하여, 현장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실행 및 응급의료기관(보건복지부 지정) 후송 등 구호 조치함.
- 현장학습 등 외부에서 차량 사고 등의 경우는 유아들을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시킴.
- 유치원장 및 원감, 학부모와 관련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유치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함

나) 경과단계

- 사고원인 파악함.
- 사고 직후 초기 대응 및 경과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유치원장 및 원감에게 즉시 보고함.
- 유치원장은 사고 원인, 처리과정 및 향후 수습방안을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함.

다) 사후 조치 단계

- 유치원장은 사고수습 방안에 따라 대응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보고함(재발방지책 포함).
- 유치원은 안전사고 사안에 따라 관련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을 안내함.

<학교안전공제회>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학교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함.**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 발생 대응, 안전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유치원장은 학교안전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과정을 숙지하여 학부모 및 사고 관련자에게 공지함.
-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통지는 ① **사고일로 부터 7일 이내** 유치원에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으로 하며, 공제급여신청은 ② 유치원, 학부모가 필요한 필요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③ 공제회 접수일로 14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 후에는 이에 따른 ④ 결정 내역을 공문으로 유치원으로 통지함(단,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제급여 결정일로 90일이내로 신청가능함).

마. 학생보호인력 배치 및 근무 현황

| 구분 | 인원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취약지구 및 특이사항 |
|--------|----|------------------------------------------------------|-------|---------------------------|
| 배움터지킴이 | 1명 | 평일 2회 오전 8:20~9:10 (50") 오후 12:50~14:00(1'10") | 1인 근무 |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등하교 교 통안전지도 |

☞ 학사일정이나 상황에 따라 3시간 미만 내에서 근무시간대가 조정될 수 있다.

2. 교육청 재난대응체계 및 비상연락처

가. 교육활동 중 위기상황 신속 대응

- 신속한 구조 조치 및 보고 체계 구축(선조치 후보고)

 **의미** “사고대응 **일이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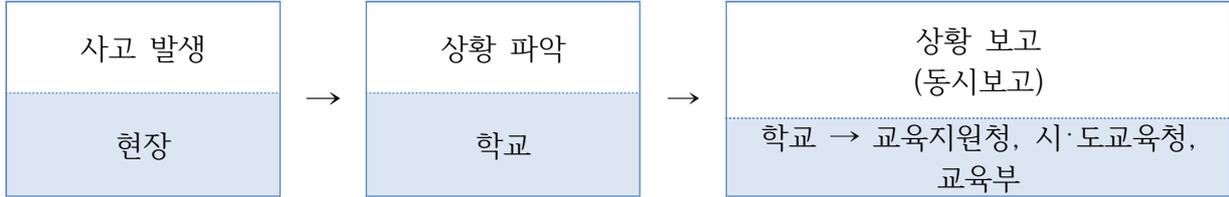
- ※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119에 신고(심폐소생술 필요시 동시, 즉시 시행)
-  사고자 구조(심폐소생술 즉시 시행, 2차 사고 예방 등)
-  선생님, 혹은 관리자에게 보고
- *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 학생안전상황실 중심의 일원화 된 보고 및 통합 대응
-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해야 하는 재난】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 (동시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



- (보고방법) 현장사고 상황파악 후 **교육부 안전 대표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moel19@korea.kr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메일로 자동 전송

-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나. 교육부 동시보고 사안 이외의 재난, 안전사고 보고체계

- 학교는 사안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해당과에 유선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 교육지원청은 사안 관련 도교육청 해당업무 소관 부서에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서를 제출

【도교육청 주요 사안별 해당부서】

| 주요 사안 | 해당부서 | 연락처 |
|-----------------|---------|-------------------|
| 급식, 식중독 등 | 교육급식과 | 031-249-0451~0455 |
| 건강, 보건, 환경, 위생 | 체육건강교육과 | 031-249-0593~0597 |
| 체육교육, 학교운동부 | 체육건강교육과 | 031-249-0292~0293 |
| 과학 실험·실습 | 특성화교육과 | 031-820-0593~0595 |
| 자연재난, 화재, 승강기 등 | 재난예방과 | 031-820-0727~0729 |

- 기타 관련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특수, 정보, 유아 등) 또는 학생안전과
- 체험학습, 학생폭력 사안 보고 체계

 학교 → 이천교육지원청 (031-639-5651) →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 주간 031-820-0790~3, FAX 821-1098, 야간·공휴일 031-820-0514, 0524】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3.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가. 관련 관공서

| 구분 | 기관명(담당자) | 연락처 |
|-------|---------------|--------------|
| 관공서 등 | 경기도교육청 | 031-820-0720 |
| | 이천교육지원청 | 031-639-5651 |
| | 이천소방서 | 031-645-5323 |
| | 이천경찰서 | 182 |
| | 한국전력공사 | 123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1588-7500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부 | 031-259-3500 |
| | 대한적십자사 | 02-3705-3705 |

나. 인근 병원

| 병, 의원 | 전화번호 | 이송소요시간 (자동차 이용) | 구급차 여부 | 비고 |
|----------|--------------|--------------------|-----------|------------|
| 바른병원 | 031-630-0300 | 20분 | ○ | 건강검진기관 |
| 파티마병원 | 031-635-2624 | 20분 | ○ | 건강검진기관 |
| 이천의료원응급실 | 031-639-4931 | 25분 | ○ | 응급상황시 이송기관 |

4.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망

| 구분 | 종목 | 업체명 | 연락처 |
|--------|-------------|-------------------------|------------------------------|
| 시설관리 | 소방안전관리 | 선인방재 | 031-265-0119 |
| 시설관리 | 전기안전관리 | 한국전기안전공사 | 031-630-1900 |
| 시설관리 | 승강기유지보수 | 성림엘리베이터 | 033-761-4113 |
| 보안경비 | 캡스무인경비 용역 | 에스원 | 1588-3112 |
| 보안경비 | 당직유인경비 용역 | 대영기업 | 031-637-4088 |
| 대용량정수기 | 먹는물관리 |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 웅진 1588-5200 청호 1588-2290 |
| 정보화물품 | 학내망유지보수 | 대신네트워크 | 031-631-8282 |
| CCTV | CCTV유지보수 | 유지보수 × | |
| 잔반처리 | 음식잔반처리 | 유림기업 | 02-2202-7170 |
| 폐식용류 | 폐식용류수거 | 에스제이바이오(주) | 070-8841-8797 |
| 물품공급 | 농산품(쌀,김치포함)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부발농협하나로마트 | 031-631-0271 |
| 물품공급 | 공산품 | 유농푸드 | 031-631-0272 |
| 물품공급 | 수산물(3월~2월) | 수협중앙회단체급식사업소 | 1577-4113 |
| 물품공급 | 축산물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 031-635-8555 |
| 물품공급 | 우유,유제품 | 서울우유마장대리점 | |

2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 유치원,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및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 구분 | 내용 | |
|-------------|----------|----|
| 학교 출입 지점 현황 | 교문 수 | 2개 |
| | 본관 현관 수 | 2개 |
| | 구관 현관 수 | 4개 |
| | 체육관 현관 수 | 2개 |
| 학생 보호 인력 현황 | 학교배움터지킴이 | 1명 |
| | 학교전담경찰관 | 1명 |

○ 방문객(차량)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 구분 | 내용 |
|----------------------|-------------------------|
| 방문객(학부모 포함) 출입 관리 방침 | 행정실에 방문후 방명록 작성후 출입증 착용 |
| 출입증 관리 방침 및 절차 | 행정실에 담당자 관리 |
| 방문객 및 출입증 관리자 | 행정실무사 |

다.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 출입증 구분 | 유효기간 | 세 부 기 준 |
|--------|----------------|----------------------------------------------------------------------------------------------------------------------------------------------------------------------------------------------------------------------------------------------------------------------------------|
| 일반 출입증 | 발급일 ~ 최대 3년 | 1)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3)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5)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6)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7)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일일 방문증 | 발급 당일 | 1) 학교시설(운동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3) 학생의 보호자 (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유치원 방문시 현관의 벨을 누르고 기다린다. 담당 교사의 확인 하에 출입한다.

2.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

- 학교주변 통학로, 교내 차량 통행로 등 위험지도 작성 등 대응 철저
 - 1) 위험지역 및 무엇이, 왜? 위험한지 등 사전 교육철저
 - 2) 교직원, 학부모 등 차량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내
 - 3) 등·하교 학생을 위한 교문 바로 앞 정차 금지 및 안전한 승하차 장소를 지정하여 학부모에게 지속적 안내
-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1)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방해 시 적절한 조치
 - 2) 교직원, 학생보호인력 등 학교주변 등·하곳길 안전지도
- 시설 공사 시 안전관리
 - 1) 시공업체에 건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공사와 필요한 경우(소규모공사) 착공 후 7일 이내에 공사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안전을 위한 상호협조체계 등 학교 실정이 고려된 「학교안전관리 계획서」 요청
 - 2)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공사 착공 시 학교장은 공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일지를 관리하고, 각 시공사는 작업 계획 시행 전 제출

3.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

- 식자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수령한다.
단, 감염병 거리두기 기간에는 구관 1층 택배실에 두고 담당자가 수령한다.
- 교직원의 개인, 사적인 물품은 학교에서 수령하지 않는다.

4.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 방침

- 행정실장은 마스터키(비상열쇠)를 관리 및 분기별 점검하고, 캐비닛 보관 등 보안 관리를 철저

| 구분 | 보관장소 | 관리 방법 | 특이사항 | 비고 |
|-----|--------------|-----------------------------------|----------------------------------|----|
| 평상시 | 행정실 열쇠보관함 | 각 교실 등 열쇠번호 교체 시 즉각 교무실에 변경 처리 | 비상열쇠(마스타키)는 시설관리 직원 및 당직자가 관리 | |
| 비상시 | 행정실 비상배낭 | “ | “ | |

5.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방침

- 정문은 체험학습 차량 통행이나 학교 행사가 있는 경우에 개방하고, 평소에는 차량 통행을 금한다.
- 교직원 차량 주차는 후문 주차장을 이용한다.
- 보호자 통학차량은 가급적 후문 정차를 자제하며, 정문 하차시 출입구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고 학교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다.



6. 보관구역(식료품, 유해(위험/화학)물질, 장비,약품 등) 관리 방침

- 유해물질, 장비, 약품 등은 담당교사가 관리하며 열쇠를 잠궈 둔다.

7. 교무실과 유치원,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현황

| 구분 | 내용 | |
|------|------------|-----------------------------------------------------------------------------|
| 정전 전 | 방송 시설 | 교무실에서 각 교실로 전체 방송 가능 |
| | 전화(인터넷폰) | 각 교실 인터넷폰 번호를 교무실에 비치 및 관리 |
| | 메신저 | 경기도교육청메신저 활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가능 |
| 정전 후 | SNS 상황전파체계 | 1단계 : 교장, 교감, 행정실장, 기능부장, 학년부장, 간사(실무사1) 2단계 : 각 학년부장,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상황전파 |
| | 인편연락 | * 교무실→학년부장, 행정실장 연락 * 각 부장 및 책임자→소속 교직원 |

8. 비상탈출구, 2차탈출구(창문) 관리

| 구분 | 내용 |
|--------|----------------------|
| 비상 탈출구 | 유치원 현관 출입문, 본관 옥상문 등 |
| 2차 탈출구 | 건물 1층 유리 창문 등 |

- 비상대책반 중 안내유도반은 건물 1층 유리 창문, 옥상문 등 비상시 2차 탈출구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행정실 연계 점검)

9. 방과 후 과정 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 방과 후 과정 교실의 운영은 방과후과정 전담사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점검을 한다.

10.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 개방 원칙

- 1)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받은 후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2)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후 개방하며 학교행사, 시설 공사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

○ 개방 시설의 종류 및 개방 시간

- 1) 개방 시설은 운동장으로 제한한다.
- 2) 개방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평일 :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 09:00~17:00
 - 단, 동절기(11월~2월) 개방시간은 16:00까지로 한다.

○ 안전 관리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 중이라 할지라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때
 - 2) 이용자는 학교 시설물을 오염·훼손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시에는 즉시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3) 이용자는 학교 내에서 고성방가, 음주, 흡연, 탈의 등의 교육적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4) 이용자는 학교 내에서 가열 및 조리할 수 없고, 허가받은 장소 외의 출입을 금한다.
 - 5) 이용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6) 이용자는 본교의 관리자나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사용에 따른 신청절차와 허가서식
- 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방문 또는 학교시설 사용 예약을 통하여 신청 접수한다.
 - 2) 신청 접수 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개시 2일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학교관리자 및 당직자는 해당 사용일에 단체 이용자의 신분,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고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개방을 허락한다.

1. 유치원 연간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목적

- 가. 유아 및 교직원의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안전생활의 습관화
- 나. 체험 위주의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로 운영의 실효성 제고
- 다. 반복교육 및 상시 안전교육 실시

2. 방침

- 가.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매주 1차시씩 지도(연간 및 주간교육계획안에 포함)
- 나.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을 통한 안전의 생활화
- 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현장체험학습 진행)

3. 세부계획

가. 시기별 추진 개요 (업무담당자 업무추진 개요, *학교폭력예방교육내용 별도로 계획함.)

| 추진 내용 | 목표 | 대상 | 시기 | 담당 | 비고 |
|--------------------------------------------------------------------------|---------|---------|----------|--------------|-----|
| 학교안전위험성진단 | 1회 | 교직원 | 10월~12월 | 생활진로, 행정실 | 비예산 |
| 2023 학교안전계획 작성 | 1회 | 교직원 | 22년2월 | 안전담당 | 비예산 |
| 2023 학교안전계획 교직원 교육 | 1회 | 교직원 | 23년2월 | 안전담당 | 비예산 |
| 7대 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 1회, 상시 | 유.1~6학년 | 3월,수시 | 생활진로, 담임 | |
| 통학로 및 통학방법 조사 (자료-교무실 비치) | 1회 | 유.1~6학년 | 3월 | 안전담당 | |
| 각종 안전교육 세부계획 수립 | | | | | |
| - 나침반 안전교육 | 1회 | 유.1~6학년 | 3월 | 생활진로 부장 | |
| - 안전점검의 날 운영 | 1회 | 교직원 | 3월 | 안전담당 | |
| - 학교위생환경정화구역 관리계획 | 1회 | 교직원 | 3월 | | |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활용 교육 | 학기중 주5회 | 유.1~6학년 | 3월~2월 | 담임 | 비예산 |
| 매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매일 | 교직원 | 매일 4일 | 행정실 | 비예산 |
| 안전교육 교육과정 반영 | 상시 | 유.1~6학년 | 3월~2월 | 생활진로 안전담당 | 비예산 |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안전교육 운영 *안전주간 운영 -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 학기중 1회 | 유.1~6학년 | 3월~2월 4일 | 담임 생활진로 안전담당 | 비예산 |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 재난 교육 철저 | 1회 | 유.1~6학년 | 10월 | 안전담당 | 비예산 |
|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경찰관 등 외부 인사 활용 교육 실시 | 1회 | | | 생활진로 | 비예산 |

| | | | | | |
|------------------------------------|----|---------|-------------------|--------------|-------------|
| - 교육과정내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1회 | 유.1~6학년 | | 안전담당 담임 | 예산 |
| - 생존수영 수업 | 1회 | 3,4학년 | | | |
| 재난대피 훈련 실시 | | | | | |
| - 지진대피훈련 2회 | 2회 | 유.1~6학년 | 5월, | 생활진로 안전담당 | *소방 (예산) |
| - 소방훈련 2회(1학기-소방서 합동, 2학기-학교자체) | 2회 | | 10월, | | |
| - 민방공 훈련 학기당 1회(2회) | 2회 | | 4월, 11월 *미정 | | |

나. 연간 안전교육 교육 계획 (7대 안전교육, 5분 나·침·반 안전교육)

| 월 | 주 | 7대 안전교육 | 아동복지법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나침반 안전교육 | 영역 | |
|---------|----------------|-------------------|-------------------|-----------------------|-----------------------------------------------------------------------------------------------|-------------------|-----------------|-----------------|
| 3 | 1 | 재난안전 | 재난대비안전 | 작고 작은 미세먼지 | (학교안전교육법) -재난안전: 1시간 -직업안전: 1시간 -폭력예방: 2시간 -교통안전: 1시간 -생활안전: 1시간 -약물안전: 2시간 | - | | |
| | | 직업안전 | | 원에서 일하시는 분 | | 계단 | 생활안전 | |
| | 2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약물오남용 | 약은 무엇일까요? | | 유치원 안전 | 생활안전 | |
| |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약물오남용 | 어리석고 어리석은 너구리 | | 계단 보행 | 생활안전 | |
| | 3 | 3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 안전하게 걸어요 | 운동장 | 생활안전 |
| | | | | | | | 놀이터 안전 | 생활안전 |
| | | 4 | 생활안전 | 실종유괴방지 | | 교실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 미술시간 | 생활안전 |
| | | | | | | | 가정침입 | 실종,유괴, 미아 예방 |
| | | | | | | | 낮선 사람 방문 | 실종,유괴, 미아 예방 |
| | 5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어린이 성폭력, 네 잘못이 아니야 | | 실종,유괴 | 실종,유괴, 미아 예방 | |
| | | | | | | 실종 | 실종,유괴, 미아 예방 | |
| | 4 | 1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 때리면 아파요 (가정폭력) | 유괴 | 실종,유괴, 미아 예방 |
| | | | | | | | 무단횡단 | 교통안전 |
| | | 2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약물오남용 | |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 스쿨존 | 교통안전 |
| | | | | | | | 올바른 약 사용 | 약물,사이버 중독 |
| 3 | | 생활안전 | 실종유괴방지 | 끼임 사고 조심하기 | 올바른 약 사용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 올바른 약 사용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 올바른 약 사용 | 약물,사이버 중독 | | |
| 4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요 | 약물 오남용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 언어폭력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 | |
| 4 | 1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때리면 아파요 (가정폭력) | 약물 오남용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 사이버폭력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 |
| | 2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약물오남용 |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 학교폭력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 |
| | | | | | 학교폭력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 |
| | 3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차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 | 성폭력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 |
| 출혈, 상처 | | | | | 응급처치 | | | |
| 응급처치 신고 | | | | | 응급처치 | | | |
| | | | | | 지혈 | 응급처치 | | |

| | | | | | | | | | |
|--------|----------------|----------------|--------------------------------------|-----------------------------------------------------|---------------------------------------------------------------------------------|----------|--------------|-------------------|-------|
| | | | | | | 염좌 | 응급처치 | | |
| | | | | | | 손씻기 | 감염병 예방 | | |
| 4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 -성폭력: 2시간 -약물오남용:1시간 -실종유괴: 1시간 -교통안전: 1시간 | | 손 씻기 | 감염병 예방 | | |
| | | | | | | 감염병 | 감염병 예방 | | |
| | | | | | | 손 씻기 | 감염병 예방 | | |
| | | | | | | 황사 | 재난대비안전 | | |
| | | | | | | 미세먼지 | 재난대비안전 | | |
| | | | | | | 미세먼지 | 재난대비안전 | | |
| | | | | | | 미세먼지 | 재난대비안전 | | |
| | | | | | | 황사,미세먼지 | 재난대비안전 | | |
| | | | | | | 미세먼지 | 재난대비안전 | | |
| | | | | | | 횡단보도 | 교통안전 | | |
| | | | | | | 횡단보도 | 교통안전 | | |
| | | | | | | 5 | 1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약물오남용 |
| 부상 | 응급처치 | | | | | | | | |
| 2 | 생활안전 | 보건교육 | 깨끗한 나의 손 | 감염병 | 감염병 예방 | | | | |
| | | | | 놀이공원 안전 | 생활안전 | | | | |
| 3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 등산안전 | 생활안전 | | | | |
| | | | | 캠핑안전 | 생활안전 | | | | |
| 4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내 몸은 보물이에요 | 불량식품 | 식품안전 | | | | |
| | | | | 식중독 | 식품안전 | | | | |
| 6 | 1 | 재난안전 | 재난대비안전 | 소화기로 불을 꺼요 | (아동복지법) -약물오남용:2시간 -보건교육: 1시간 -교통안전: 1시간 -성폭력: 2시간 | | 식품안전 | 식품안전 | |
| | | | | | | | 식중독 | 식품안전 | |
| | 2 | 응급처치 | 실종유괴방지 | 사람이 없는 곳에 가지않아요 | | | 베란다 | 생활안전 | |
| | | | | | | | 가정 | 생활안전 | |
| | 3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나를 지켜주는 보호 장구 | | | 가정안전 | 생활안전 | |
| | | | | | | | 승강기 | 생활안전 | |
| | 4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내가 싫어하면 안으면 안돼요) | | | 승강기 | 생활안전 | |
| | | | | | | | 승강기 | 생활안전 | |
| | | | | | | 승강기 | 생활안전 | | |
| | | | | | | 승강기 | 생활안전 | | |
| 지하철 이용 | | | | | 교통안전 | | | | |
| 버스이용 | | | | | 교통안전 | | | | |
| 6 | 1 | 재난안전 | 재난대비안전 | 소화기로 불을 꺼요 | (학교안전교육법) -재난안전: 1시간 -응급처치: 1시간 -생활안전: 2시간 -교통안전: 1시간 -폭력예방: 1시간 | 지하철 이용 | 교통안전 | | |
| | | | | | | 안전벨트 | 교통안전 | | |
| | 2 | 응급처치 | 실종유괴방지 | 사람이 없는 곳에 가지않아요 | | 통학버스 | 교통안전 | | |
| | | | | | | 안전횡단 5원칙 | 교통안전 | | |
| | 3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나를 지켜주는 보호 장구 | | 무단횡단 | 교통안전 | | |
| | | | | | | 신호등 | 교통안전 | | |
| | 4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내가 싫어하면 안으면 안돼요) | | 흡연예방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 | 간접흡연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 | 흡연예방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 | 인터넷 안전 | 약물,사이버 중독 | | |
| 6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내가 싫어하면 안으면 안돼요) | 게임중독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 | 아동학대,성폭력 | 폭력예방 및 | | | | |

| | | | | | | | | | |
|---|----------------|----------------|-------------------------|---------------------------------------------------|-------------------------------------------------------------------------------|----------------------------------------------------------------|---------------------------------------------------------------------------------|------------|------|
| | 4 | 생활안전 | 실종유괴방지 |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 | | 유아성교육 | 신변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 |
| | | | | | | 성폭력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 |
| | | | | | | 성폭력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 |
| | | | | | | 지진,해일 | 재난안전 | | |
| | | | | | | 지진 | 재난안전 | | |
| | | | | | | 해일 | 재난안전 | | |
| | | | | | | 지진, 해일 | 재난안전 | | |
| 7 | 1 | 재난안전 | 재난대비안전 |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요 | (학교안전교육법) -재난안전: 1시간 -폭력예방: 1시간 -생활안전: 1시간 -교통안전: 2시간 | 지진 | 재난안전 | | |
| |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 | 전자레인지 | 생활안전 | | |
| | 2 | 생활안전 | 실종유괴방지 | 낮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 | 물놀이 안전 | 주방 tv | 생활안전 | |
| | | | | | | | 전기안전 | 생활안전 | |
| | | | | | | | 바닷가 안전 | 생활안전 | |
| | | | | | | | 계곡안전 | 생활안전 | |
| | 3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비 오는 날의 안전 | | (아동복지법) -재난안전: 1시간 -성폭력: 1시간 -실종유괴: 1시간 -교통안전: 2시간 | 물놀이 안전 | 생활안전 | |
| | | | | | | | 계곡안전 | 생활안전 | |
| | | | | | | | 물놀이 안전 | 생활안전 | |
| |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위험해요 위험해요 | | | 일사병 열사병 | 생활안전 | |
| | | | | | | | 폭염 | 재난안전 | |
| | | | | | | | 폭염 | 재난안전 | |
| 8 | 4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교통안전 표지판을 알아요 | (학교안전교육법) -교통안전: 1시간 -생활안전: 1시간 -폭력예방: 1시간 | 편식 | 식품안전 | | |
| | | 생활안전 | 실종유괴방지 | 선생님과 손을 잡아요 | | 식중독 | 생활안전 | | |
|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광명이의 이야기 (아동학대예방 동화) | 광명이의 이야기 (아동학대예방 동화) | | (아동복지법) -교통안전: 1시간 -실종유괴: 1시간 -성폭력: 1시간 | 물놀이안전 | 생활안전 | |
| | | | | | | | 나트륨 | 식품안전 | |
| | | | | | | | 교통표지판 | 교통안전 | |
| | | | | | | | 오토바이 위험 | 교통안전 | |
| | 9 | 1 | 재난안전 | 재난대비안전 | | 태풍은 무서워요 | (학교안전교육법) -재난안전: 1시간 -폭력예방: 1시간 -직업안전: 1시간 -생활안전: 1시간 -교통안전: 2시간 | 자전거 | 교통안전 |
| | | | | | | | | 인라인 킥보드 안전 | 교통안전 |
| 2 |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요) | (아동복지법) -재난안전: 1시간 -폭력예방: 1시간 -직업안전: 1시간 -생활안전: 1시간 -교통안전: 2시간 | 사각지대 | | 교통안전 | |
| | | | | | | 심폐소생술, 하임리히 | | 응급처치 | |
| | | | | | | 심폐소생술 | | 응급처치 | |
| | | | | | | 하임리히 | | 응급처치 | |
| 3 | 직업안전 | | 엄마, 아빠 조심해요 | (아동복지법) | 부상 | 응급처치 | | | |
| | | | | | 척추부상 | 응급처치 | | | |
| | | | | | 태풍 | 재난안전 | | | |
| | | | | | | 태풍 호우 | 재난안전 | | |
| | | | | | | 붕괴 | 재난안전 | | |
| | | | | | | 가스안전 | 재난안전 | | |
| | | | | | | 테러 | 재난안전 | | |

| | | | | | | | |
|----|------|----------------|---------------|--------------------------|---------------------------------------------------------------------------------|---------|------|
| | | 생활안전 | 실종유괴방지 | 선생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 -재난대비: 1시간 -성폭력: 1시간 -실종유괴: 1시간 -교통안전: 2시간 | 교통사고대처 | 교통안전 |
| | | | | | | 비행기안전 | 교통안전 |
| | 4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 | | 구명조끼 |
| |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안전하게 타요 (자전거와 스케이트) | | 비행기안전 | 교통안전 |
| | | | | | | 야간 자전거 | 교통안전 |
| | | | | | | 끼임사고 | 생활안전 |
| | | | | | | 의류,가정환경 | 생활안전 |
| | | | | | | 가정안전 | 생활안전 |
| 10 | 1 | 생활안전 | |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 (학교안전교육법) -생활안전: 2시간 -약물안전: 2시간 -폭력예방: 1시간 -재난안전: 1시간 | 전기안전 | 생활안전 |
| | 2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약물오남용 | 콜록콜록 담배는 싫어요 | | 전기안전 | 생활안전 |
| |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 좋아요 나빠요(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 | 차량탑승 | 교통안전 |
| | 3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문을 열어주면 안돼요 | | 안전벨트 | 교통안전 |
| | | | | | | 보행 | 교통안전 |
| | | 재난안전 | 재난대비안전 | 생명의 문 비상구 | | 보행 | 교통안전 |
| | | | | | 주차장 교통위험 | 교통안전 | |
| | 생활안전 | | 계단에서 조심조심 걸어요 | 사각지대 | 교통안전 | | |
| | | | | 이면도로 | 교통안전 | | |
| | | | | | 자전거 | 교통안전 | |
| | | | | | 인라인스케이트 | 교통안전 | |
| | | | | | 부목대기 | 응급처치 | |
| | | | |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응급처치 | | |
| | | | | 벌에 쏘였다면 | 응급처치 | | |
| | | | | 감기 | 감염병예방 | | |
| | | | | 독감 | 감염병예방 | | |
| | | | | 이런 행동도 아동학대, 부모들의 실수 3가지 | 아동학대 | | |
| | | | | 스마트폰중독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지진 | 재난안전 | | |
| | | | | 안전한 해외여행 | 재난안전 | | |
| 11 | 1 | 생활안전 | 실종유괴방지 | 아무 차나 타지 않아요 | (학교안전교육법) -생활안전: 1시간 -약물안전: 2시간 -재난안전: 1시간 -응급처치: 1시간 -폭력예방: 1시간 | 해외안전여행 | 재난안전 |
| | 2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약물오남용 | 하얀 담배 연기 속 나쁜 비밀 | | 화재신고 | 재난안전 |
| | | | | | | 소화기 | 재난안전 |
| | 3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약물오남용 | 먹기 전에 어른에게 꼭 물어봐요 | | 화재대피 | 재난안전 |
| | | | | | | 불장난 | 재난안전 |
| | 4 | 재난안전 | 재난대비안전 | 옷에 불이 붙었어요 | | 화재대피 | 재난안전 |
| | | | | | 후진차량 | 교통안전 | |
| | 5 | 응급처치 | | 앗 뜨거워 화상 | 사각지대 | 교통안전 | |
| | | | | | 자전거썰빙카 | 교통안전 | |
| | | | | | 버스이용 | 교통안전 | |
| | | | | | 보행 | 교통안전 | |
| | | | | | 겨울철안전 | 생활안전 | |
| | | | | | 스케이트 안전- | 생활안전 | |
| | | | | | 겨울철안전 | 생활안전 | |
| | | | | | 겨울철 안전 | 생활안전 | |
| | | | | 썰매 안전 | 생활안전 | | |
| | | | | 동상 | 응급처치 | | |

| | | | | | | | |
|----|------|-------------------|-----------------------|--------------------------|-----------------------------------------------------------------|-------------------|----------------|
| 12 |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 | 사이버폭력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 | | | | | | 화재안전 | 재난안전 |
| | | | | | | 안전한 작업 행복한 일상 | 직업안전 |
| | | | | | | 산업재해 예방으로 해피엔딩 | 직업안전 |
| | | | | | | 제조업 안전수칙 | 직업안전 |
| | 1 | 생활안전 | 실종유괴방지 | 실종유괴예방퀴즈 | (학교안전교육법) -생활안전: 2시간 -약물안전: 1시간 -교통안전: 1시간 | 자전거 | 교통안전 |
| | | | | | | 화재안전 | 재난안전 |
| | | | | | | 대설 | 재난안전 |
| | 2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 약물오남용 | 아빠, 엄마 술은 안돼요 안 돼! | (아동복지법) -실종유괴: 1시간 -약물오남용:1시간 -교통안전: 1시간 -보건교육: 1시간 | 한파 | 재난안전 |
| | | | | | | 음주 | 약물,사이버 중독 |
| | | | | | | 대설 | 재난안전 |
| | | | | | | 눈오는날 | 생활안전 |
| 3 | 교통안전 | 교통안전 | 날씨에 따른 보행안전 | | 스쿨존 | 교통안전 | |
| | | | | | 스쿨존 | 교통안전 | |
| | 생활안전 | 보건교육 |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 | | 눈오는 날 | 교통안전 | |
| | | | | | 화재신고 | 재난안전 | |
| | | | | | 화재안전 | 재난안전 | |

다. 주간 주제를 달리하여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제에 따라 상황별 5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원론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별 위기를 상정하고 대응방법이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매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를 다운받아 적극 활용한다.

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 민방위 훈련 시 초등학교와 함께 안전교육 실시
- 매일 4일 재난대비 훈련 실시(유치원 자체)
- 4월: 이천경찰서와 연계하여 실종·유괴 방지 교육 및 지문 등록예정(사진 포함)
- 6월: 유치원 주변 횡단보도 및 교통표지판 체험활동
- 9월: 이천경찰서 교통계 경찰관 초청 혹은 방문 안전체험활동 예정

2. 재난대비 훈련 연간계획

| 일정 | 훈련명 | 훈련유형 | 대상 | 담당자 | 비고 |
|-----|----------------------------------|-----------------|--------------|-----|------------------------|
| 3월 |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 토론기반훈련 | 모든 교직원 | 김○○ | |
| 4월 | 황사·미세먼지 훈련 | 토론기반훈련 |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 김○○ | 실무사 |
| 5월 | 화재 훈련 | 현장훈련 | 모든 교직원과 학생 | 김○○ | 소방서 합동 옥내소화 전 |
| 9월 |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대응 훈련 | 토론기반훈련 | 체험학습 지도교사 | 임○○ | |
| 10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 워크숍 및 현장훈련 등 | 모든 교직원과 학생 | 김○○ | 옥상 방화 셔터 |
| 11월 | 실험·실습안전 훈련 | 토론기반훈련 |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 서○○ | 과학실 |

※ 학교 재난 대비 훈련 담당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을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

3. 비상배낭의 마련과 관리

가.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 비상배낭을 상시 비치한다.

나.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닛 보관 등 보안·관리 철저히 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 화재경보기 작동법 ○ 스프링클러 작동법 ○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 학생 대피장소 ○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명단 ○ 구급약품 배치 현황 ○ 비상용 손전등 ○ 지압봉대 ○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 |
|------------------------------------------------------------------------------------------------------------------------------------------------------------------------------------------------------------------------------------------------|---------------------------------------------------------------------------------------------------------------------------------------------------------------------------------------------------------------------------|

다. 각 학급별 비상배낭 상시 비치(현장체험학습 시에도 활용 가능)

- (예시) 손전등, 목장갑, 비상약품 등

4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1. 비상 커뮤니케이션의 실행

가. 학교는 발생한 재난 또는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에 따라 교직원 명단과 연락처, 재난대응, 응급의료, 관계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교육청 재난안전관리체계와의 연계 포함), 시설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처 등에 따른 비상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한다.

나. 비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 **유선전화** :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부모들의 정보요청에 응대하기 위해 학교 전화번호 중 하나(또는 그 이상의 회선)를 핫라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휴대전화** :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으로, 교직원들이 이동하는 중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2. Drop-cover-hold(몸을 낮추고, 머리를 감싼 자세 유지)

가. 목적

Drop-Cover-Hold는 사전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폭발, 건물 붕괴, 태풍, 지진 등에 의해 교실 천장과 벽 등에 놓인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교실 외부에서 날아오는 파편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는 절차이다.

나. 역할

지정된 교직원들은 이러한 절차의 개발, 실행, 평가에 참여한다.

다. 절차

- 1) 실내 절차 : 실내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바닥으로 몸을 낮춘다.
 - 튼튼한 테이블, 책상 또는 그 밖의 가구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만일 자신이 있는 곳에 이를 위한 적합한 가구가 없다면, 자신의 팔로 얼굴과 머리를 보호한다.
 - Drop-Cover-Hold를 그만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유지한다.
 - 교직원들은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의 지시가 있다가거나 또는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결정했을 때, 학생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장소로 대피시킨다.
 - 교직원과 학생은 대피시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2) 실외 절차 : 실외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건물, 가로수, 전신주 등과 떨어진 장소로 이동한다.
 - 땅바닥을 향해 몸을 낮춘다.
 - 자신의 팔을 이용하여 얼굴과 머리를 보호한다.
 - 교직원은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의 지시가 있다가거나 또는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때, 학생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장소로 대피시킨다.
- 3) 차량 이동 중의 절차 : 이동 중인 차량에 있는 운전기사/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즉시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정차시킨다.
 - 모든 학생/교직원들에게 차량 안에 머물도록 지시한다.
 -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때 조심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 밖으로 대피한다.

3. 대피(evacuation)

가. 목적

대피는 화재, 폭발, 불법침입자, 위험물질 유출 등으로 인해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이 운동장, 체육관 또는 학교 밖의 안전지대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행되는 절차이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119(필요에 따라 112 포함)에 즉시 전화를 걸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있음을 알린다(상황에 따라 통화담당자를 지정한다).
- 교육청 담당자에게 학생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린다.
- 화재경보기, PA시스템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 전체 또는 건물 내 특정지역으로부터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린다. 경보방송(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들은 즉시, 학생들을 각자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대피 시 출석부를 지참하고 지정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학생인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위치와 비상상황의 형태에 따라 대피경로를 결정한다.
- 비상상황이 발생한 장소와 형태에 따른 대피경로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무전기 또는 핸드폰 등을 통해 대피절차를 지원할 교직원을 지정한다.
-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시사항을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한다.
-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벨, 무전기, PA시스템,

전령 또는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린다.

2) 교사

- 지정된 비상대피로 또는 학교장/안전책임관이 지시한 경로를 따라 건물 바깥으로 나가도록 지시한다. 건물 각 층의 평면도에 표시된 대피계획도는 각 교실 내부의 전등스위치 옆에 부착해 놓아야 한다.
- 1차 비상대피로가 막혀있거나 위험한 상황인 경우에 2차 대피로를 이용한다. 비상상황과 이로 인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학교장/사고지휘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전한 대피경로와 건물 내의 대피장소를 선택한다.
- 필요시 특별배려자의 대피를 도와주기로 지정된 학생에게 이들의 대피행동을 도와줄 것을 지시한다.
- 교실을 떠날 때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문을 닫고 불을 끈다.
- 학생 또는 교직원의 소지품들로 인해 대피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
- 출석부, 전화번호부, 교실 비상배낭(Go-Kit), 그 밖의 비상용품을 지참하고 대피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오는 동안 화장실, 복도, 편의시설 등을 체크한다.
- 지정된 건물 밖의 대피지역으로 이동한다
- 건물 밖 대피지역이나 건물 내부의 대피지역에 도착하면 즉시 부상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 학생 수를 확인하고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추가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지역에서 대기한다.

3) 행정직원

- 방문자 기록지와 교외 출입허가자 기록지를 지참하여 대피지역으로 이동한다.
- 교사들로부터 인원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학교장/안전책임관에게 부상학생과 부상 교직원에 관한 사항을 알린다.

4. 역대피(reverse evacuation, 실내대피)

역대피(Reverse Evacuation)는 학교 건물 바깥보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상황, 즉 악천후, 지역 사회에서의 비상상황 발생, 조직범죄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의 위험물질 유출 등과 같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행된다.

가.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학교 건물 바깥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역대피 명령을 내린다. PA시스템, 메가폰, 무전기,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집합시킨다.
- 교육청 관계자에게 상황을 통보한다.
- 119 또는 112에 신고한다.
- 라디오,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교직원을 지명한다.
- 외부 문과 창을 닫고 잠근다.
- 재난안전담당자 또는 안전담당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학교안전사고가 전개되는 상황 변화에 따라 Drop-Cover-Hold 또는 대피소 피난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협의한다.

2) 교사/직원

- 가장 가까운 건물 입구를 통해 즉시 학생들을 교실 또는 건물 내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학생이나 교직원 어느 누구도 건물 밖에 있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외부 문과 창을 닫고 잠그도록 지시한다.
- 만일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 건물 밖에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어 지정된 학교 내 또는 학교 밖 장소로 이동하여 집합하도록 지시한다.
-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출석을 확인하고, 실종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공공안전담당자(소방관, 재난안전전문가 등)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린다.
- 위협요인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학교의 주출입구를 감시한다.

5. 대피소 피난(shelter-in-place)

가. 목적

대피소 피난(shelter-in-place)절차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동안 학생, 직원, 시민 등이 학교 내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PA시스템, 무전기, 전화기, 메가폰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대피소 피난절차를 실시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지정된 대피장소와 안전지대로 이동하십시오. 건물 밖에 있는 모든 직원과 학생들은 즉시 건물 안으로 대피하십시오.”

- 학교 건물 바깥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역대피 명령을 내린다. PA시스템, 메가폰, 무전기, 전화, 메신저를 활용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집합시킨다.
- 모든 외부 문과 창을 닫고 잠그도록 지시한다.
- 필요하다면 외부의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물의 냉난방과 환기시스템을 차단할 것을 지시한다.
- 교육청에 학교가 대피소 피난을 실시하였음을 통보한다.
- 라디오,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대피소 피난을 유발시킨 학교안전사고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교직원을 지명한다.
- 재난안전요원과의 접촉을 유지하며 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실시한다.
-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교사/직원

- 학생들을 지정된 장소 즉 창문이 없는 방, 지하실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어 자세를 낮추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도록 지시하여 날아올 수 있는 파편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만일 건물 바깥에 있는 경우라면 학생들에게 학교 건물 내부의 안전한 지역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대피장소로 들어갈 것을 지시한다.
- 돌풍이나 태풍 등의 악천후로 인해 건물이나 대피소 안으로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계곡의 나무나 전봇대 등이 없는 배수로나 낮은 장소로 이동해 쪼그리고 앉거나 누워있도록 한다.
- 건물 내부로 이동시 유해한 화학연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연기가 닿지 않는 장소로 학생들을 이동시킨다.
- 학교장/사고지휘관 또는 긴급구조대로부터 바깥이 안전해졌으니 대피소에서 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모든 학생들이 대피소 안에 머물도록 지시한다.

3) 시설관리자

- 학교장/사고지휘관 또는 응급구조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시설을 잠근다.
- 난방, 환기, 냉방 등의 공기순환시스템을 잠그라는 지시가 있을 때 이를 실행한다.
-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피소가 마련된 건물의 현관에 ‘대피소’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카드를 부착한다. 그러나 흡기난동, 불법침입,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학교 내 건물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피소’ 안내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6. 락다운(Lockdown)

가. 목적

락다운은 흉기 난동이나 불법침입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간장벽(time barrier)을 만들어내기 위한 초기의 물리적 대응방안으로 독립형 방어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 후, 그곳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문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대피방안 또는 필요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P/A시스템, 무전기, 전화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전달한다.

“주의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지금 락다운을 실시합니다.”

- 112 신고자를 지정하고, 그는 학교명과 주소, 비상상황을 설명하고 학교가 락다운을 실시하였다는 사실과 (만일 파악하고 있다면) 불법침입자의 인상착의와 소지한 흉기, 학교의 사건지휘소 위치 등을 전달한다. 업데이트된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신고자가 전화통화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 건물 외부에 있는 교직원들과 운동장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즉시 학교 밖 집합장소로 이동할 것을 통보하고,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이들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체험학습 후 돌아오는 버스가 있는 경우) 버스의 배차담당자 또는 운전기사를 관리하는 용역회사에 학교로의 운행을 중단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것을 통보한다.
- 교육청에 락다운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린다.

2) 교사

- 복도와 화장실에 있는 학생들을 자신의 교실로 들어오도록 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도록 한다.
- 문을 잠근다(복도측 창에 설치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서 복도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한다).
- 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커다란 물건들을 옮겨 놓는다. 이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의자 등의 물건들을 활용한다.
- 출석을 확인하여 실종된 학생 또는 자신의 교실에 피신 중인 학생이나 방문객에 대한 사항을 학교 사고지휘관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흉기소지자나 불법침입자가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이들로부터 학생들이 재빠르게 뛰어서 탈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 교직원과 학생들은 큰소리를 지른다거나 흉기소지자/불법침입자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향해 물건을 던짐으로써 이들이 흉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준비한다.
- 학교 사고지휘관으로부터 위협상황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전달받는다거나 창문 등을 통한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전까지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3) 행정직원

- 응급구조기관 등과 학교 안전책임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리며 전화기 옆에 대기한다.
- PA시스템, 전화, 컴퓨터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교실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의 지휘소 설치를 지원한다.

4) 시설관리자

- 물류차량의 출입문을 포함하여 모든 출입문을 닫고 잠근다.
- 물류차량기사, 작업자, 용역직원 등이 건물 내의 안전한 장소에서 문을 잠그고 있도록 지시한다.

락다운이 실시되는 동안 건물 외부에 일부 학생과 교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은 이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 장소로 이동시킨다.

7. 휴기 난동

가. 목적

휴기를 사용한 교내 범죄사건의 발생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교직원에게 112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시받은 교직원은 학교명과 주소,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 발생한 비상상황의 성격, 불법침입자의 수와 용모(생김새와 복장 등), 소지한 휴기의 종류, 이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 학교가 취한 행동 그리고 현재 학교의 보안요원들이 위치한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자는 112와의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사건지휘소인 행정실(또는 교무실)에 대한 경비를 실시하고, 커뮤니케이션, 교직원과 학생들의 위치, 학교와 건물의 평면도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학교비상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문서와 물품 등을 준비해 놓는다. 만일 사건이 행정실(교무실)에서 일어나는 경우 사건지휘소로 사용할 별도의 장소를 지정한다.
- 행정직원들로 하여금 인터폰이나 무선전화기 등을 통해 교사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건 발생을 통지하고 대응을 요청한다.
- 교사와 학생들을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필요시 학교 밖의 재결집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것을 지시한다.
-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학교로 들어오거나 하는 방문객과 차량의 진입을 막도록 지시한다.
- 학교를 향해 오고 있는 모든 버스(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들은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가도록 지시한다.

2) 교사/직원

-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경찰관과 같은 사고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락다운을 실행한다.
- 만일 무단불법침입자를 학교에서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112에 신고한 후 이러한 사실을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통보하여 락다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실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신의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자신의 교실에 피신해 들어온 사람들의 수를 확인한다.
- 건물 밖으로의 대피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닌 경우,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사건현장지휘관(경찰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교실 내에서 락다운 상황을 유지한다.
- 만일 불법침입자가 교실에 들어온 상황인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위협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 만일 불법침입자가 교실에서 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책, 컴퓨터, 전화기, 가방 등을 던져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거나 침입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교실 밖의 다른 장소로 도망가라고 말한다.

다. 그 밖의 절차

- 휴기난동자/불법침입자의 행동이 진압된 후, 학교장/안전책임관은 사건현장지휘관(경찰관)과의 협의하여 방송을 통해 대피 실행과 가족복귀를 위한 장소로 재결집할 것을 안내한다.
- 교직원 또는 학생이 부상당한 경우 응급구조요원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의료처치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대피학생들이 모여 있는 재결집 장소의 지휘관에게 가족복귀 절차의 실행을 통보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재결집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 등의 교통편을 요청한다.
- 교사들은 지정된 대피경로를 이용하여 사전에 배정된 집합장소로 학생들을 대피시킨 후, 학생의 출석

을 확인하고 버스 승차장으로 이동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위기대응팀의 활동 개시와 정신건강 치료절차의 시작을 지시하고,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게 상담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통보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듣는다.
- 학교장과 교육장(또는 교육장이 지명한 자)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가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 후, 이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8. 무단침입/인질극

가. 목적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내에서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학교 재산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모든 교직원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사전에 받아 놓아야 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른다.
- 만일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임을 밝힌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왜 방문했는지 묻는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비실에서 방문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 후, 이들과 동행하여 경비실로 이동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의 학교 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라 판단되면 이들에게 학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
-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무단침입자가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이들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들과 만난 당시의 상황(이들을 발견한 장소, 인상착의, 소지한 무기·흉기 또는 소지품 등)을 파악한다.
-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단침입자와 시각적 접촉을 유지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경찰(112)에게 학교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무단침입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한다(되도록이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단침입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 학교장/사고지휘관은 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락다운을 발령한다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실행한다.
- 만일 인질극을 벌이는 자가 당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끼여들지 않는다.

※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인질이 된 경우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인질범의 지시에 따르거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 인질이 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이 있는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인질범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인질범과 언쟁을 벌이지 않는다.

2) 학교장/안전책임관

- 즉시 112에 신고한다. 인질범의 수와 인상착의, 인질극이 벌어진 정확한 장소, 학교가 취한 조치(락다운 또는 폭발물을 소지한 인질범에 의한 대피)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알려준다. 인질협상팀에게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 락다운 또는 상황에 적합한 필요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 건물 바깥에 위치한 교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한다.
-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격리시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질범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교육장에게 인질극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시킨다.
- 인질범과의 협상을 위한 팀이 도착하는 경우 이들에게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다.
-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3) 교사/직원

- 교직원은 락다운 또는 지시가 내려진 절차를 실행한다. 만일 학교 건물 밖에 있는 경우 학생들을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 후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9. 폭발사고

가. 목적

보일러 과열, 가스누출, 화학(위험)물질의 유출, 사람에 의한 폭발물 설치, 자연재해 등의 결과로 폭발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학교가 취해야 할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대피 프로토콜
- 가정복귀(학생/학부모 인계) 프로토콜
- 응급의료 프로토콜
- 정신건강치료 프로토콜

폭발을 목격한 교직원, 학생 또는 방문객 등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후 폭발사고가 발생했음을 학교장과 119에 신고한다. 폭발사고 현장지휘관(소방관/경찰관)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들에게 넘기고 이들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한다. 또한 소방당국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119에 전화를 걸어 폭발사고로 인해 화재경보기를 작동하였음을 알리고, 학교 이름과 위치, 폭발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지점,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 상황, 건물 대피 현황과 사고지휘소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대피를 발동시킨다.
- 사전에 지정해 놓은 1차 또는 2차 대피경로를 통해 교직원, 학생, 방문객들을 건물 밖의 집합장소로 즉시 대피시킨다. 집합장소가 폭발에 의한 붕괴 또는 지속적인 폭발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재집합하도록 지시한다.
- 교육청에 폭발사고가 있었음을 통지하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한다.
- 방문자 명단, 조퇴학생 명단, 사고 관련 중요문서, 정보, 물건, 물품 등을 지정된 사고지휘소로 가져올 사람을 지명한다.
- 교사로부터 학생명부를 취합하여 실종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직원을 지명한다.
- 가스, 전기, 수도 등 관련 시설을 잠그기 위해 움직이는 것에 별다른 위험성이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지시한다.

-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교육장, 소방관, 경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집합장소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결정 되면, 교직원과 학생들을 재배치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다.
- 재배치를 실행하는 경우 가정복귀 절차를 가동시킨다.
-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수업 진행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응급재난기관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교직원과 학생의 건물진입을 금지시킨다.

2) 교사/직원

- 수업출석부, 비상배낭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챙긴 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침착하게 학생들을 건물 밖 지정된 집합장소로 데리고 나온다.
- 1차 대피경로가 막혔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2차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피경로를 이용한다.
- 이동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돕는다거나 도와줄 사람을 지정한다.
- 모든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한다.
- 집합지역에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학교장/안전책임관에게 알린다.
- 학생들과 함께 머물면서 추후의 지시를 기다린다.
-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전까지 안전한 지역에 대기한다.
- 학교 밖에서 재집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 학생들에게 이동을 준비시킨다.
- 재난안전기관의 확인이 있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10. 현장체험활동에서의 사고

일반적으로 버스는 학생들을 단체로 이동시키는 경우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버스기사가 안전한 운전을 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차량운전자의 부주의나 날씨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가 현장체험활동에 사용할 버스에는 항상 응급상자, 소화기, 손전등, 비상경고장비(교통사고 안내판, 야광조끼 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버스사고 발생시 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비상대응기관(119, 112)에 응급지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위치, 사고의 심각성, 부상자, 현재 버스에 비치된 장비 등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응활동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활동 그리고 사고로 인한 2차적 위험상황(화재 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린다.

- 사고 발생시 버스기사에게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시동을 끄며, 비상등을 켜도록 한다.

- 사고로 인해 필요한 후속의 대응행동을 실행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침착하게 있도록 지도한다.

- 버스기사에게 사고에 의한 화재와 같은 2차적인 위험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도록 한다.

- 후속차량에 의한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가 사고로 인해 정차 중이란 것을 다른 차량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 학생들을 버스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만일 화재나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 등과 같은 2차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안전한 버스 안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한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부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부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상자를 버스 밖으로 옮기지 않는다.

-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장/사고지휘관 또는 응급대응기관이 사고로 인한 상황 변화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상황 변화를 알려준다.

- 만일 학생들이 사고버스에서 다른 장소(병원, 피난장소, 다른 버스)로 이송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보(이송된 학생의 이름 등)를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학생과 차량의 추가적인 부상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에 대한 증거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유지한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 구급요원들의 지시에 협조한다.
- 사고처리가 종결된 이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 **버스사고 발생시 학교장/안전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사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을 찾아 보내거나 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를 지원할 교직원을 사고 현장으로 파견한다.
 - 사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나 물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버스 탑승객의 이름, 상태,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송된 경우 그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교육청과 학교의 부모연락 담당자에 이를 통보한다.
 - 필요한 경우, 부상자를 치료하는 응급요원(또는 이송병원의 치료의사)에게 학교가 보유한 특별배려학생들에 대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필요한 경우, 현장에 파견된 교직원들에게 후송하는 부상자들과 함께 움직일 것을 지시한다.
 - 「가정복귀(학생/학부모 인계) 프로토콜의 실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치료」 프로토콜의 실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11. 화재

가. 목적

- 학교는 소방훈련에 관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화재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훈련받는다.
- 화재 또는 연기를 발견한 사람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 교장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또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즉시 신고한다.
- 비상사고지휘관(소방관)이 도착하면, 화재현장에서 이들의 지시를 따르고 협력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119에 신고하거나 신고자를 지정하여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였음을 알리고, 학교 이름과 위치, 화재 또는 연기가 나는 정확한 장소, 교직원 또는 학생들 중의 부상자 발생 유무와 규모, 대피 실행 여부, 교내 사고지휘소의 위치를 알린다.
- 대피 명령을 발동시킨다.
- 교직원, 학생, 방문객들을 지정된 대피경로(1차 대피경로가 화염이나 건물파손 등으로 인해 막힌 경우에는 2차 대피경로를 이용)를 이용하여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지정된 집합장소가 건물붕괴나 화염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집합장소를 재배치한다.
- 교육청에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시작한다.
- 교직원에게 학교 방문자 명단, 조퇴학생 명단, 사고대응에 필요한 중요문서, 도면, 정보, 물품 등을 교내에 설치된 사고지휘소에 가져오도록 한다.
- 교사들로부터 등교학생의 명단을 취합하여 실종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직원을 지정한다.
-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화재로 인해 안전이 불안해진 경우)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으로 대피하여 지정된 재배치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 재배치를 실행하는 경우 가정복귀 절차를 가동시킨다.
-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로 다시 돌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화재현장의 소방관 또는 재난지휘관으로부터 안전을 확인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

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교직원들에게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이들이 언제 교실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2) 교사/직원

- 출석부, 비상배낭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챙기고, 학생들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차분하게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다.
- 지정된 경로가 막혔다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대피경로를 활용한다.
- 이동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탈출을 돕거나 또는 도와줄 사람을 지정한다.
-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이나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명을 끄고 교실 문을 닫는다.
- 집합장소에 학생들이 모두 모였는지를 확인한다.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 사고지휘관/학 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 학생들이 집합장소에 모여 있도록 지도하면서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것이 안전해졌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 소방서에서 안전을 확인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12. 응급의료

가. 목적

학교안전사고 등에 의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학교 응급의료체계의 실현과 이를 통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직원에게 119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필요하면 응급구조요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 한다.
- 응급구조/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 훈련을 받은 교직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을 사고 현장으로 보낸다.
- 119 구급대원이 학교에 도착하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구급대원이 오는 장소에 직원을 미리 보내 놓는다.
-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부상자 곁에서 이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직원을 배치한다.
- 부상자가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부모, 보호자 또는 그 밖의 적합한 가족구성원에게 부상(질환)의 형태, 현재 상황, 취해진 응급조치, 부상자가 이송된 병원이 어디인지 알린다.
- 부상학생(교직원)에 관한 의료 관련 정보를 후송병원에 명확하게 전달한다.
- 응급의료 프로토콜의 가동과 관련하여 교직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취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다.
- 응급환자를 발생시킨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정신건강 치료' 절차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2) 교사/직원

-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우선, 자기가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건담당 교사/학교장/안전책임관에게 이를 알린다.
- 부상이나 질환의 심각성을 파악한다.
- 즉각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119에 전화하도록 한다. 학교명, 주소,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 장소(건물명, 층수, 교실번호), 질환 또는 부상의 형태, 환자의 나이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는다.
- 환자의 신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한다.
- 응급의료인력(응급구조요원, 간호교사, 해당 응급처치 자격소지자 등)의 도움이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이 받았던 응급처치 훈련의 수준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부상자의 호흡이 없거나 맥박이 뛰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동제세동기(AED, 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말하고, AED가 도착하여 사용할 수 있기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다. 만일 AED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 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용법에 대한 지시를 들어가며 AED를 사용한다.

13. 폭염

가. 목적

통상 30°C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 폭염에 의한 열부종,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일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기상청의 폭염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기상청의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자제시키도록 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교내 및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을 점검·확인한다.
- 기상청의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 발생시 학교의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2) 교사/직원

- 폭염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
 - 폭염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의 실외·야외활동을 자제시킨다.
 - 체육활동 등의 실외수업은 그늘이나 체육관에서 실시한다.
- 폭염경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실외·야외활동을 금지시킨다.
 - 체육활동 등의 실외수업은 실내수업으로 대체한다.
- 폭염에 의한 환자 발견시 생명이 위험한 긴급상황임을 인식하고, 119 연락 및 현장에서 몸을 차게 식히는 등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한다
 - 시원한 장소(통풍 잘되는 그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 등)로 옮긴다.
 - 옷을 벗긴 후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차게 식힌다. 만일 얼음주머니가 있을 경우 이마, 목, 겨드랑이, 가랑이 등에 대어 몸을 식힌다.
 - 환자의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한 경우
 -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스포츠 드링크)를 먹인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염분(식염수 → 물 1ℓ에 소금 1~2g)을 섭취케 한다.
 - 필요시 119에 연락한다.
 - 환자의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19에 연락한다.
 - 불렀을 때나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이상하거나 응답이 없거나 토하는 증상을 보이면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히며 수분섭취를 금지한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킨다.

3) 보건담당 교사/영양교사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한다.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에 취약한 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자와 과체중자)를 특별관리한다.

14. 황사

가. 목적

눈, 코, 기관지 질환, 심한 경우 심장과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빈번한 황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기상청의 황사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기상청의 황사주의보(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mu\text{g}/\text{m}^3$ 범위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시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 학생들의 실외.야외학습을 실내학습활동으로 검토.조정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교내 및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을 점검.확인한다.
- 기상청의 황사경보(매우 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시 교사들에게 황사 관련 질환자를 파악.보고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조기귀가, 치료 등) 여부를 결정한다.

2) 교사/직원

- 황사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 학생들에게 황사 발생 대비 목, 코, 눈 보호를 위한 다음의 대처요령을 교육한다.
 - 황사 발생 중 실외.야외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검토.조정한다.
- 황사경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황사 관련 질환자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하며, 특별 관리(조기귀가, 진료 등) 결정시 보건교사와 협조하여 이를 실행한다.

3) 보건담당 교사/영양교사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를 점검.강화한다.
- 황사 관련 질환자의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등) 필요성을 파악하고 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황사 종료 후 실내.외(급식소)를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15. 태풍집중호우

가. 목적

폭풍우를 동반하는 태풍과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호우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재난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집중호우 주의보.경보를 확인한다.
-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주의보(태풍으로 인한 강풍.풍랑.호우가 예상될 때, 6시간의 강우량이 7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 및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확인한다.
 - 지역 내 저지대(지하로) 및 상습침수구역의 위치를 교직원에게 알린다.
 - 교사들에게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의 교육 실시를 지시한다.
 -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용한다.
 - 침수.단전 등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학교 내 붕괴, 산사태, 침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접근금지 표시, 배수로 청소, 옥상

배수관 점검 등).

-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경보(태풍으로 인한 강풍.풍랑.호우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6시간의 강우량이 11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필요시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한다.
 - 교사들에게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의 재교육 실시를 지시한다.
 - 학생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활동 등)을 검토.조정한다.
 - 토석류 붕괴, 산사태 등 학교 내 위험지역 접근을 막는다.
 - 등.하교시 위험상황(침수, 통학로 소실 등)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 피해 발생시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2) 교사/직원

- 태풍.집중호우 주의 또는 경보 발령시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시설은 출입을 금지한다.
 -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하지 않는다(익사위험).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하지 않는다(감전위험).
 - 비락이 치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가급적 혼자서 다니지 말고 친구, 선배 등과 함께 동행한다.
 -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해야 한다.
 - 호우로 걷기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한 건물로 피한다.
 - 학교 내 붕괴우려지역(공사장 주변, 옹벽, 경사지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 출입문을 꼭 닫는다.
-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께 알리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3) 시설관리자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시설물의 침수, 파손, 붕괴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들을 실행한다.

16. 식중독

가. 목적

식품섭취로 인해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한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인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한다.

나. 학교급식 단계별 조치사항

| 구분 | 관 심(Blue) | 주 의(Yellow) |
|-------|-----------------------------------------------------------------------------------------------------------------------------------------------------------------------|-----------------------------------------------------------------------------------------------------------------------------------------------------------------------|
| 판단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10~34 •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 •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35~50 •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팀 검출 보도 •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발생 • 일부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
| 조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교육부/교육청) ▶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교육부/교육청) ▶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학교) |
| 구분 | 경 계(Orange) | 심 각(Red) |
| 판단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51~85 •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 •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이상 발생 •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85이상 • 집단급식소에서 100명이상 식중독 발생 • 단위학교 학생의 30%이상 설사환자 발생 • 3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
| 조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교육부/교육청) ▶ 체험학습 억제, 급식중단, 대책반 운영(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교육부/교육청) ▶ 급식 및 체험학습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학교) |

17. 지진

가. 목적

지구 내부의 단층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나. 단계별 행동수칙

1) 안전확보

- 지진 발생 직후 머리 보호 및 책상 아래로 대피 지시
 - 손, 책,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
 - 출입문 개방 및 각 학급의 전원 차단
 - 흔들림 후, 화재 등 2차 재난 방지

2) 대피

- 흔들림이 멈춘 후 지정된 대피경로에 따라 신속한 대피 지시
 - 전교생 대피 지시(방송, 타종, 음성, 메가폰, 호루라기 이용)
 - 인솔 교사 통제 하에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 지시
 - 학교 건물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운동장이나 넓은 공간으로 대피
 - 인솔 교사는 대피 장소 학생 질서 유지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학생 대응

3) 긴급 대응 방안 강구

- 학교장 주재로 초동 대처 및 향후 대책 결정
 - 학생전원대피여부 파악
 - 학생안전상태 및 피해상황 파악
 - 지진 규모, 진앙 확인
 - 수업 진행여부
 - 귀가 시 학생 안전대책 등

18. 미세먼지

가. 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어린이·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단계별 주관·유관·실무기관의 대응·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 고양

나. 학교의 역할

- 고농도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경보 상황 상시 확인
- 학생들의 실외수업 자제, 임시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등 단계별 조치사항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7일 이내 → 교육지원청)

다. 대응단계 및 대응요령

| 단계 | 대 응 요 령 |
|--------------|-----------------------------------------------------------------------------------------------------------------------------------------------------------------------------------------------------------------------------------------------------------------------------------------------------------------------------------------------------------------------------------------------------------------------------------------------------------------------------------------------------------------------------------------------------------------------------------------------------------------------------------------------------------------------------------------------------------------------------------------------------------------|
| 평시 사전준비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학생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식 :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악화시 행동요령 숙지,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마스크 사용 ✓ 호흡기질환자 :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마스크 사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사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 |

| | |
|-----------------------------------------------------------------------------------------------|--------------------------------------------------------------------------------------------------------------------------------------------------------------------------------------------------------------------------------------------------------------------------------------------------------------------------------------------------------------------------------------------------------------------------------------------|
| | |
|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수업대체 여부 검토 등)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
| 예비주의보 ①당일 예보 “나쁨”이상, ②PM ₁₀ 100이상 또는 PM _{2.5} 50이상 2시간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야외수업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바깥활동과 도로변(교통량 많은곳)이동 자제, 보건용 마스크 쓰기 - 눈이 가려울때 손으로 만지지 말고 물로 씻거나 점안제 사용 - 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질환예방 - 달리기 등 외부 활동량 최소화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청소기 대신 물걸레 청소 등) |
| 주의보 PM ₁₀ 150이상 또는 PM _{2.5} 90이상 2시간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등학교 야외수업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 경보 PM ₁₀ 300이상 또는 PM _{2.5} 180이상 2시간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시 이전 경보 발령시 가급적 휴업 검토, 등·하교 시간 조정, 수업단축 조치(학생·학부모 공지)(※ 학사일정 등 고려·조정)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교내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19.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

가. 목적

다중밀집 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 행사 진행 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간격 유지하는 등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히 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체험학습, 교외 행사장 방문 등

나. 예방방법

-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체험학습, 교외 행사장 방문 등에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 간격을 유지하기
-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앞 사람과의 간격 유지하며 걷기
- 움직일 수 없거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 벗어나기
-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의 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며 걷기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상황 알리기
- 팔짱을 끼거나 가방, 옷 등으로 흉부 보호하기
- 넘어졌을 때 위험성 줄이기 위해 몸을 작은 자세로 웅크려 보호하기
- 운동화처럼 편하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신발 신기

1. 재난사고 발생시 심리적 치료 체계 구축

가. 목적

-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학교구성원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등 학교가 본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 이차적인 후유증과 심각한 사회적 확산을 방지

나. 학교의 역할

1) 사전 조치사항

- 학교는 학교 내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각 역할을 분담한다.
 - 구성 시 학교 내·외 전문가를 위기대응팀에 구성하고 재난대응계획의 수립·실행·평가를 한다.
- 학교장은 위기대응팀 구성원들이 담당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재난사고 발생 후 신체적·정신적 징후에 대한 연수나 홍보를 실시하여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재난위기 발생 시 정신적·심리적 자기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계획·실시한다.

2) 사후 조치사항

- 학교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1차 위기대응 관계자(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 장소는 학교로 하며, 사건에 대한 공지와 학부모 공지 수준, 이후 진행될 위기 대응 일정조율, 시간 계획과 각 담당별 업무분담에 대해 논의한다.
- 확인된 사실만을 교사 → 학생 → 학부모 → (필요한 경우) 언론의 순서로 공지한다.
 - 공지하는 범위는 유가족과 사전 협의를 하며, 학생에게 공지할 경우 담임이 반별로 공지하는 것을 권장한다(전체 방송안내 지양).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서면과 휴대전화 문자를 함께 이용한다(서면 안내문이 유실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 고려).
 - 언론공지는 반드시 교감으로 일원화하여 공지한다.
- 학생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리검사나 교직원과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 심리지원을 한다.
- 학교 내에 위기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휴게실 및 상담실)을 마련하고,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 심리적 위기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 추후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 심리지원: 교육청 위(Wee)프로젝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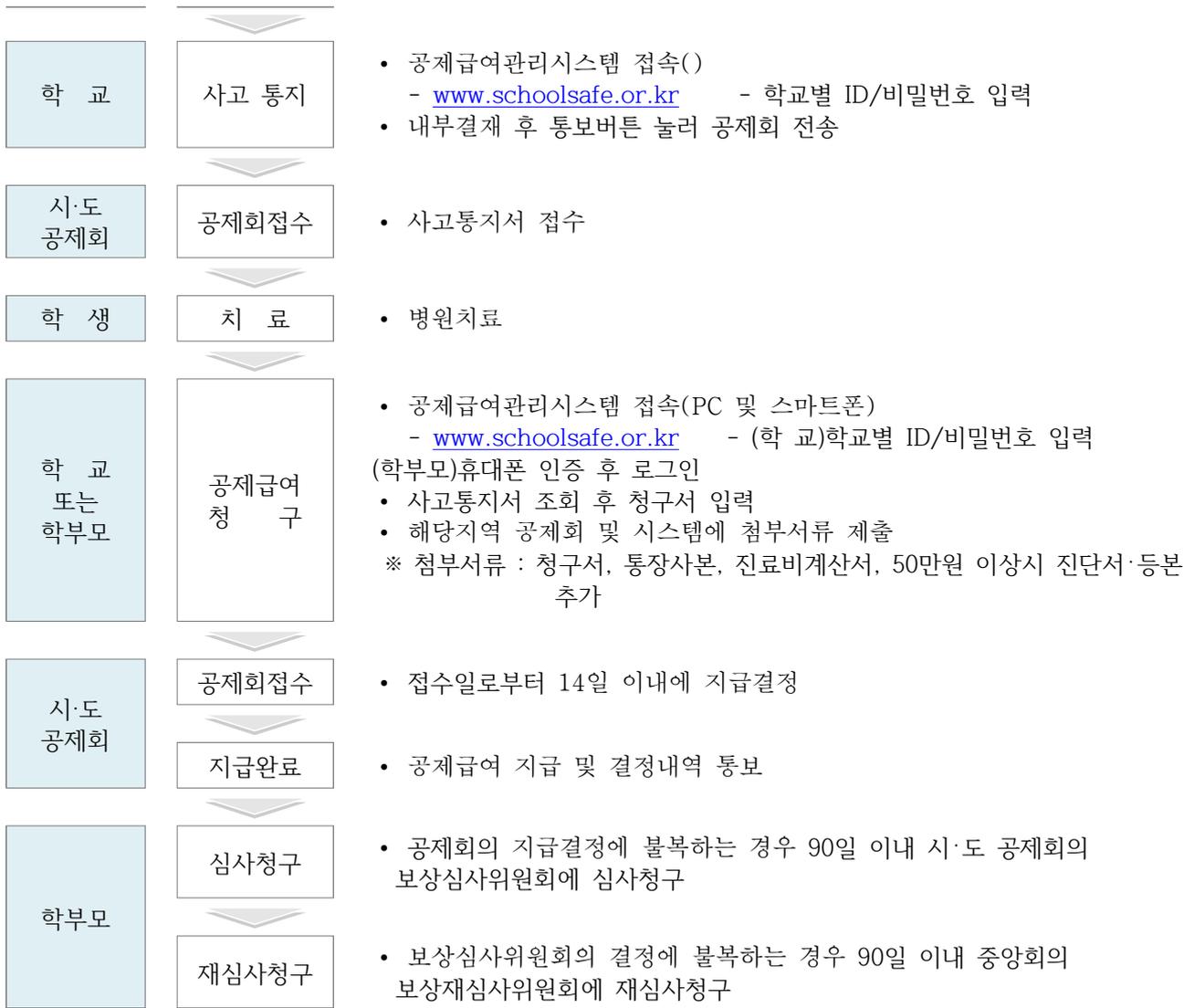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www.ggssia.or.kr)

2. 시설 복구

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재난복구비) 신청절차

| 구 분 | | 업 무 처 리 |
|-----|-------|-------------------------------------------------------------------------------------------------------------------------------------------------------------------------------------------------------------------------------------------------------------------------------------------------|
| 학 생 | 사고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



나. 화재발생시 시설 복구 관련기관

| 구분 | 지원내용 | 연락처 |
|----------------|------------------|---------------|
| 관할(이천) 소방서 | ■ 피해지원(화재증명원 발급) | 031-645-5211 |
|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 ■ 생필품 지원(긴급생계대책) | 031-230-1600 |
| 화재보험(현대해상) | ■ 화재보험금 지급 | 031-633-2031 |
| 세제지원(세무서/세무과) | ■ 국세, 지방세 지원 | 031-8019-1200 |
| 전기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 ■ 전기시설 안전점검 | 031-240-4400 |
| 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 ■ 가스설비 응급복구 | 031-259-3500 |

3. 피해보상 청구

가. 교육활동중 인적 사고의 경우 피해보상 청구 절차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관련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교내·외 교과활동,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활동, 등·하교, 현장실습, 이동시간 중의 활동 등을 말함